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과용 도서 적기 보급 의무 부과 등〉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5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문 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교과용 도서 지위 부여 및 교과용 도서 적기 보급 의무 등	3
2. 교육자료 활용 시 장애학생에 대한 불이익 발생 방지	8
3. 통합교육 시책의 내용에 교과용 대체자료 관련 사항 포함	11
4. 개정안 부칙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예지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17.

3.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를 말함. 그러나 점자·확대 교재 등의 제작이 지연되어 학생들에게 당장의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점역한 분권 형태로 보급되는 등 제때 이용할 수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KS 표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게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장애인용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삽화 등을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변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출판사에서 변환하지 않은 채 제공함에 따라 교재 제작에 추가적인 시

간이 소요되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국가 수준의 표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교과용 도서 지위 부여 및 교과용 도서 적기 보급 의무 등(안 제29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제작한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하여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제1항),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도서의 적기 공급 의무를 부과하며(제4항), 교육부장관은 매년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u>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u>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 <u>제1호에 따른 교과서, 제2호에 따른 지도서와 제3호에 따른 교과용 대체자료를-----.</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교과용 대체자료: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u>

<신 설>

<신 설>

를」 제14조제1항제4호에 부
합하도록 「저작권법」에 따
른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도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매년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

선정, 가격 사정(査定), 교
과용 도서의 공급 시기 및 점
검-----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¹⁾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²⁾에 부합하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³⁾”로 변환하여 제작한 것을 “교과용 대체자료”로 정의하면서 교과용 도서에 교과용 대체자료로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도

- 1)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3)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3.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4.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5.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교과용 도서를 적기에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다만,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②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⁴⁾」이 본회의에서 의결(2026. 03.31.)되었음⁵⁾.

□ 또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용 도서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곧 시행될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시키고,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

4) 의안번호 2217886

5) 2026년 4월 28일에 공포되어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될 예정임.

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자료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므로⁶⁾, 대체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점자교과서가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공급시기 및 점검”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자 하나 이미 규정중인 교과용 도서의 “공급”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⁷⁾.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대구)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이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교과용도서 적기 보급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할 경우 「점자법」 제12조의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
- 6)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7) 교육부는 또한 교과용 도서의 법적 지위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내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가가 편찬 또는 검·인정을 통과하여 공인된 교육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있다면, 그것이 일반 문자로 인쇄되었든 점자로 변환하여 인쇄되었든 당연히 교과용 도서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시키는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교육자료 활용 시 장애학생에 대한 불이익 발생 방지(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교육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② (생략) <u><신설></u>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장은 교육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점자자료 등 편의제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8).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수단]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한편, 현행법은 “교육 자료”를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 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① 「저작권법」 제2조제1호9)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10)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③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교육 자료에 대하여 장애인 학생 등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반의 “교육 자료”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반의 교육자료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의 교육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9)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3. 통합교육 시책의 내용에 교과용 대체자료 관련 사항 포함 (안 제59조)

가. 개정안의 요지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시책의 내용에 교과용 대체자료 마련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u>교육과정</u>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통합교육) ----- ----- ----- ----- ----- <u>교육과정, 교과용 대체자료</u> ----- ----- -----.

나. 검토의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음¹¹⁾.

- 한편,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를 비롯한 교과용 도서
의 경우 법 제4장(학교) 제1절 통칙 부분에 규정(제29조 - 교과용도
서)되어 있어 통합교육¹²⁾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
임.
- 또한, 법 제5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학절차, 교육과정
마련 등 통합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교육에 대
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과용 대체자료
마련의 경우 교육 수단으로써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과
정 마련 등과 함께 시책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으로 보임.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교과용 대체자료는 넓은 의미에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통
합교육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의 성격상 교과용 대체자료
라는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
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
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12) 통합교육의 경우 같은 제4항 제7절(특수학교 등)에 규정(제59조 - 통합교육)되어 있음.

4.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¹³⁾, 개정안의 경우 교과용 도서의 공급 시기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13)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